

신문 · 방송국 규정

(제정 1981. 9. 3.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건학이념 구현과 건전한 학풍 조성, 대학문화 창달 및 계승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신문·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기관의 명칭은 전주대학교 신문·방송국(이하 “신문·방송국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위치) 신문·방송국은 전주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업무) 신문·방송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대학신문(영자신문 포함) 발간
2. 교내 방송
3. 그 밖에 신문 발간 및 교육방송국 운영에 관한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5조(국장 및 지도교수) ① 신문·방송국에 국장을 두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신문·방송국장은 신문·방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총괄한다.
- ③ 영자신문의 제작을 위하여 외국인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- ④ 외국인 지도교수는 신문방송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담당직원) ① 신문·방송 업무는 학생지원실에서 관장하며, 신문·방송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신문·방송 담당직원은 국장을 보좌하여 신문의 발간 및 방송활동에 관련된 사항과 이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7조(언론지도사) ① 신문·방송제작을 위하여 필요시 언론지도사를 둘 수 있으며, 언론지도사는 국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언론지도사는 국장의 명을 받아 신문·방송 제작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 3 장 구 성

제8조(구성) ① 신문·방송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신문편집국과 방송실무국을 둔다.

- ② 신문편집국은 국장, 부장, 정기자, 수습기자로 구성하며 편집국장은 편집국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방송실무국은 국장, 부장, 정기자, 수습기자로 구성하며 실무국장은 실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를

관장한다.

제9조(신문편집국) ① 신문편집국은 학술부, 사회부, 여론부, 문화부, Herald부로 구성한다.

② 신문편집국에는 신문 발간에 따른 취재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기자를 둘 수 있다.

③ 학생기자는 국장, 부장, 정기자, 수습기자로 구분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.

④ 편집국장과 부장은 정기자를 마친 3학년 중에서 임용하고, 정기자는 수습기자를 마친 2학년 중에서 임용하며, 수습기자는 1학년 중에서 소정의 선발절차에 의하여 임명한다.

⑤ 신문편집국의 학생기자는 신문·방송국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방송실무국) ① 방송실무국에 기획부, 보도부, 제작부, 기술부, 아나운서부를 둔다.

② 방송실무국에 교내 방송(오디오 및 TV 방송)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기자를 둘 수 있다.

③ 학생기자는 국장, 부장, 정기자, 수습기자로 구분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.

④ 실무국장과 부장은 정기자를 마친 3학년 중에서 임용하고 정기자는 수습기자를 마친 2학년 중에서 임용하며 수습기자는 1학년 중에서 소정의 선발절차에 의하여 임명한다.

⑤ 방송실무국의 학생기자는 신문·방송국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(신문·방송 제작회의) ① 신문·방송 제작에 필요한 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매주 한차례 제작 회의를 실시한다.

② 제작회의는 신문·방송국장, 담당직원, 언론지도사, 정기자 이상의 학생기자로 구성하며, 신문·방송국장은 제작회의를 관장한다.

제12조(신문배포 및 방송송출) 신문의 배포와 방송의 송출은 신문·방송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3조(재정) 신문·방송국의 재정은 교비 및 보조금, 그 밖의 잡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4조(예·결산) 신문·방송국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며,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5 장 신 문 · 방 송 운 영 위 원 회

제15조(구성) 신문·방송운영위원회는 학생취업처장과 신문·방송국장, 학생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6명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5.18>

제16조(위원장) 신문·방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. <개정 2012.5.18>

제17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임기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제18조(기능) 신문·방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신문·방송 논설 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
2. 신문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제 6 장 기 타

제19조(상벌) 학생기자의 포상과 징계는 운영지침에 따른다.

제20조(운영세칙) 신문·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